

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최정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2-50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일자	2022. 3. 11
발 의 자	최정환, 김종두, 심재수, 권재경, 이재운, 김향란, 표주숙, 이흥희, 신재화, 권순모, 박수자 의원

1. 제안 이유

거창사건희생자 생활보조비 지원조례는 희생자가 2인 이상인 유족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 유족의 상처치유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거창사건 희생자 2인 이상인 경우 유족 생활 보조비를 정함 (안 제3조)
- 나. 생활 보조비 지급대상을 정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, 제7조
- 「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지원 조례」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(조례)

나. 예산조치 :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거창사건사업소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3. 15. ~ 3. 21.

나) 예고결과 :

3) 비용추계서 :

4) 성별영향평가 :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“생활보조비 100,000원을”을 “생활보조비를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지원 대상 및 기준) 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족으로 한다.

②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생활보조비 지원)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유족에게 매월 <u>생활보조비 100,000원을</u>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지원대상) 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<u>유족으로서, 지급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한 명의 희생자에 대하여 한 명의 유족에게만 지급한다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배우자 2. 자녀 3. 부모 또는 조부모 4. 형제자매 <p>② <u>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.</u></p>	<p>제3조(생활보조비 지원)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유족에게 매월 <u>생활보조비를</u>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지원 대상 및 기준) 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<u>유족으로 한다</u></p> <p>② <u>생활보조비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.</u></p>

[별표]

생활보조비 지원 기준

희생자 수	등록 유족 수	지급금액	산출 내용
희생자 1명	1명	100,000	희생자1명(100,000원) x 유족1명
	2명	200,000	희생자1명(100,000원) x 유족2명
	3명	300,000	희생자1명(100,000원) x 유족3명
희생자 2명	1명	200,000	희생자2명(200,000원) x 유족1명
	2명	400,000	희생자2명(200,000원) x 유족2명
	3명	600,000	희생자2명(200,000원) x 유족3명
희생자 3명	1명	300,000	희생자3명(300,000원) x 유족1명
	2명	600,000	희생자3명(300,000원) x 유족2명
	3명	900,000	희생자3명(300,000원) x 유족3명
희생자 4명	1명	400,000	희생자4명(400,000원) x 유족1명
	2명	800,000	희생자4명(400,000원) x 유족2명
	3명	1,200,000	희생자4명(400,000원) x 유족3명
희생자 5명	1명	500,000	희생자5명(500,000원) x 유족1명
	2명	1,000,000	희생자5명(500,000원) x 유족2명
	3명	1,500,000	희생자5명(500,000원) x 유족3명

[비고]

- 가. 희생자 수와 유족 수는 예시임
- 나. 유족 1명당 희생자 수에 따라 지원
- 다. 희생자 1명당 매월 지급금액은 100,000원임

관련법령

□ 「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
[시행 2014. 1. 7.] [법률 제12200호, 2014. 1. 7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거창사건등”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.
2. “유족”이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(이하 “사망자”라 한다)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. 다만,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.

제7조(유족의 등록) ①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②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배우자
 2. 자녀(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)
 3. 부모 또는 조부모
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
- ③ 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(법률 제5148호 居昌事件等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の 시행일인 1996년 4월 6일을 말한다)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1. 7.]

□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

[시행 2020. 10. 1.] [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579호, 2020. 5. 6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·인권·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“유족”이란「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족으로서, 지급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한 명의 희생자에 대하여 한 명의 유족에게만 지급한다.

1. 배우자
 2. 자녀
 3. 부모 또는 조부모
 4. 형제자매
-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